조선왕릉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지침

[시행 2016.6.17] [조선왕릉관리소예규 제8호, 2016.6.17, 일부개정]

조선왕릉관리소(기획운영팀) 02 - 3700 - 1813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규정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한 객관적인 절차와 공정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조선왕릉관리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‘ 기간제근로자 ’ 라 함은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
2. ‘ 무기계약근로자 ’ 라 함은 상시적 ·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.
3. ‘ 채용권자 ’ 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을 말한다.
4. ‘ 상시적 · 지속적인 업무 ’ 라 함은 연중 항상 필요한 업무로서,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2장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

제4조(구성)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조선왕릉관리소장으로, 위원은 조선왕릉관리소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명(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~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선왕릉관리소의 인사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둔다. 서기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위원장을 보조한다.

제5조(위원회정족수 및 의결정족수)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심의 의결 사항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
2.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

3.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규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
4. 표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
5. 정원 재배정 및 직종 조정 등
6.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

제3장 무기계약근로자 채용

제7조(채용 자격요건) 조선왕릉관리소 소속 ‘ 기간제근로자 ’ 중 ‘ 상시적 · 지속적인 업무 ’ 에 종사하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직종에서 총 근속기간이 ‘ 1년 이상 ’ 인 자여야 한다.

제8조(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 검토) ① 조선왕릉관리소 기획운영팀장 및 지구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 결원 및 정원 증가 등으로 채용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기본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조선왕릉관리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‘ 상시 · 지속적인 업무 ’ 종사 여부
2.근속기간 1년 이상 판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
②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사유는 별표 1과 같다.

제9조(직무수행능력 평가 실시) ① 채용권자인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능력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평가자는 팀장 또는 지구관리소장이며 확인자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이다.

제10조(인사위원회 심의)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다.

1. 제출된 기본요건이 채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한다.
2.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업무실적 · 직무수행능력 ·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11조(심의 결과 통보) ① 조선왕릉관리소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결과를 조선왕릉 소속 기관 및 문화재청 조직 및 인사부서에 통보한다.

② 조선왕릉관리소장은 「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관리 규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제4장 정원 재배정 및 직종 조정

제12조(정원 및 직종 조정) 조선왕릉관리소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및 직종 조정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
1. 별표2의 총 정원 한도 내에서 조선왕릉 소속 기관별 · 직종별 정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.
2. 조직개편 및 업무 조정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 인사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5장 기 타

제13조(인사 등 관리)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, 징계, 정원 · 직종 조정은 조선왕릉관리소장의 권한이며, 복무, 휴 · 복직, 교육훈련, 보수 지급 등은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 · 전결규정」에 따라 지구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

제1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8호,2016.6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